

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11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지역보건법이 전문개정('96. 7. 1.시행)됨에 따라 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의 관계조항을 정비하고, 수수료 징수방법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설(간이상수도 및 먹는물공동시설)의 검사에 한하고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검사기관과 일원화시키고 수수료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보완함 (안 제5조의 1 및 제5조의 3)

나. 입원실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불필요한 입원관련 조항을 삭제함 (안 제8조)

다.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(안 제9조).

□ 개정조례(안) : 별첨

□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~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- 지역보건법 제14조
-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
-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.

~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

- 기 간 : '99. 9. 11 ~ 9. 30 (20일간)
- 의견없음

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1을 삭제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의2(수질검사 항목 및 시험의뢰)

- ① 별표1에 의한 수질검사 항목을 시험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2의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는 공문서로써 이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별표1에 의한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의한다.
- ②제1항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, 성적서 재발급시에도 또한 같다.
- ④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5조의 4제1항중 “별지 제4,5,6호 서식의 시험성적을 “별지제4호 서식의 시험성적”으로 한다.

제5조의5중 “이를 표시할 수 없다”를 “표시할 수 없도록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의6제2항중 “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, 시험을 한 물품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”를 “말소 당사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의7(검사시험등 불용)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의뢰받은 검사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2항제3호중 “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”를 “비상 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”로 한다.

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공익상 필요한 경우
2.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
3.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
4. 이동진료(취약지역, 사회복지시설등)
5.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
6.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.

다만, 응급 투약에 한한다.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질검사항목(제5조의2 관련)

구 분	검 사 항 목	수 수 료
음 용 수	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	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 규칙에 의함
	색 도	
	탁 도	
	냄 새	
	맛	
	일반세균	
	대 장 균	

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험용 검체소요량 (제5조의2 관련)

검사시험종별	시험용검체소요량	처리기간
수질검사	물2리터이상	7일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중 중 “완료일자”를 “완료예정일자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검사방법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검사방법 :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(환경부령 제42호)에 준함

비 고 :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

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3]

증명 발급 수수료 (제5조의4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수 수 료
1. 보통진단서	1통당	500
2. 특별진단서(요양신청용)	"	2,000
3.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	"	5,000
4.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(중기·총포용)	"	2,000
5.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	"	500
6. 성별 및 연령 감정서	"	2,000
7. 사망 진단서	"	500
8. 1호 내지 7호의 재발급	"	300
9.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추가 및 재발급	"	500
10. 1호 내지 7호의 추가 발급	"	100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(안)
제5조의1(공중목욕장 수질검사)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표1과 같이 한다.	<삭 제>
제5조의2(음용수의 음용적부를 위한 수질검사 시험의뢰)	제5조의2(수질검사 항목 및 시험의뢰) <p>① 별표1에 의한 수질검사 항목을 시험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2의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는 공문서로써 이를 의뢰할 수 있다.</p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3(수수료 및 징수방법) <p>①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“별표1”의 기준에 의하며 “별표1”에 기재되지 아니한 “별표1”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사본 청구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③ 검사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의 여비는 안산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	제5조의3(수수료 및 징수방법) <p>① 별표1에 의한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의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성적서 재발급시에도 또한 같다.</p> <p><삭 제></p> <p>④ 검사시험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제5조의4(시험성적서의 교부)</p> <p>① 제5조의2에 의거 검사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<u>별지 제4,5,6호서식의 시험성적서</u>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5조의4(시험성적서의 교부)</p> <p>①----- ----- <u>별지 제4호 서식의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의5(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)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.</p>	<p>제5조의5(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) ----- ----- <u>표시할 수 없도록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5조의6(성적원본의 말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<u>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, 시험을 한 물품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의6(성적원본의 말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<u>말소</u> <u>당사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5조의7(검사시험등 불용) 검사, 시험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시험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의7(검사시험등 불용) 제5조의2에 의해 <u>의뢰받은 검사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8조(입원서약서 및 보증금)</p> <p>①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역서한 입원서약서(별지 제1호서식)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~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상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제9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</p> <p>① 보건소장은 공의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</p> <p>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의상 필요한 경우 2.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 접종 3.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4. 이동진료(취약지역, 사회복지시설등) 5.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.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. 다만, 응급투약에 한한다.
<p>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민방위 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</p> <p>4.~5. (생략)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민방위 비상 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</p> <p>4.~5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					기 정(안)		
[별표 1] <u>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</u>						[별표 1] <u>수질검사항목</u>		
(단위 : 원)								
음용수		공중목욕장(원수)		공중목욕장(육수)		구 분	검 사 항 목	수 수 료
검사시험항목	수수료	검사시험항목	수수료	검사시험항목	수수료			
합 계	12,310	합 계	6,930	합 계	6,170			
1.암모니아성질소	2,000	○ 성상시험		○ 성상시험		음 용 수	암모니아성질소	국립환경연구 원시험의뢰규 칙에 의함
2.질산성질소	2,000	-수소이온농도	380	-탁도	380		질산성질소	
3.색도	380	-색도	380				색도	
4.탁도	380	-탁도	380				탁도	
5.냄새	380	○ 용해성성분시험		○ 용해성성분시험			냄새	
6.맛	380	-과망간산칼륨소비량	2,000	-과망간산칼륨소비량	2,000		맛	
7.일반세균	3,000	○ 세균시험		○ 세균시험			일반세균	
8.대장균	3,790	-대장균	3,790	-대장균	3,790		대장균	

현 행

[별표 2]

시험용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

검사시험종별	처리기간	시험용검체소요량
수질검사	7일	물3리터이상

[별표 3]

증명발급수수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수수료
1. 보통진단서	1통당	500
2. 특별진단서	"	2,000
3.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	"	5,000
4.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	"	2,000
5. 출생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	"	500
6. 성별 및 나이 감정서	"	2,000
7. 사망진단서	"	500
8. 기타 증명 및 기발급 증명서 사본	"	300
9. 시험 성적 사본	"	500
10. 1통 추가 발급	"	100
11. 근로자 건강 진단서	"	500

개정(안)

[별표 2]

시험용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

검사시험종별	시험용검체소요량	처리기간
수질검사	물2리터이상	7일

[별표 3]

증명발급수수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수수료
1. -----	---	---
2. 특별진단서(요양신청용)	---	---
3. -----	---	---
4.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(증기·총포용)	---	---
5. -----	---	---
6. -----	---	---
7. -----	---	---
8. 1호 내지 7호의 재발급	---	---
9.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추가 및 재발급	---	---
10. 1호 내지 7호의 추가발급	---	---
< 삭제 >		

현 행	개 정(안)																		
<p><별지 제1호서식></p> <p><별지 제3호서식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험의뢰접수부</p> <p>번호 :</p> <p>1. 시험의뢰 내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건 명</td> <td style="width: 85%;"></td> </tr> <tr> <td>수 수 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</td> </tr> <tr> <td>접 수 일 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완료일자</td> </tr> </table> <p>2. 의뢰자 주소 :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성명 :</p> <p>3. 시험성적서 발급 신청 매수 통</p>	건 명		수 수 료	원	접 수 일 자	완료일자	<p><삭 제></p> <p><별지 제3호서식></p> <hr/> <p>----- :</p> <p>1. -----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85%;"></td> </tr> <tr> <td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 </tr> <tr> <td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 </tr> </table> <p>2. ----- :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---- :</p> <p>3. -----</p> <hr/> <p>번호 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험의뢰접수증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건 명</td> <td style="width: 85%;"></td> </tr> <tr> <td>수 수 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</td> </tr> <tr> <td>완료일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td> </tr> </table> <p>*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해 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산시보건소장 귀하</p> <p><별지 제5호서식></p> <p><별지 제6호서식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-----		-----	---	-----	---	건 명		수 수 료	원	완료일자	년 월 일
건 명																			
수 수 료	원																		
접 수 일 자	완료일자																		

-----	---																		
-----	---																		
건 명																			
수 수 료	원																		
완료일자	년 월 일																		